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
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정책 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959호, 2024 1. 9.공포, 7. 10.시행)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및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, 외국인환자 사전상담·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완화를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, 현황 공개에 대한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나. 외국인환자 사전상담·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보고의무를 삭제하고, 사후보고 항목 중 국내·외 의료인 정보 및 외국인환자 개인 특정 정보를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보고 부담 완화(안 제15조)
- 다.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

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

법 제9조의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에 대한 심층적 조사·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공개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

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”를 “전년도”로, “현황”을 “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·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1. 외국인환자의 국적, 성별, 출생연도, 진료과목, 주 질병·부상
2.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정책협의회)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(解囑)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④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⑤ 정책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정책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협회를 둘 수 있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회 및 전문가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에 대한 심층적 조사·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현황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공개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</u>

제15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(이하 “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”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를 하는 의료인의 성명, 면허번호, 진료과목 및 소속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환자를 담당하는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성명, 진료과목 및 소속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환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현재 거주 국

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 <삭 제>

가 및 지역

4.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
의 내용 및 기간

5. 외국인환자의 동의 여부에
관한 사항(법 제16조제1항제2
호만 해당한다)

② (생 략)

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
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를 하는
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
제1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외
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 현황
을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
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
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·사
후관리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
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
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제1항·제3항에 따른 통지
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보건복

①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전년
도-----
----- 현황
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----
--.

1. 외국인환자의 국적, 성별, 출
생연도, 진료과목, 주 질병·부
상

2. 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의
내용 및 기간

③ ----- 제2항-----

-----.

④ 제2항-----
-- 제3항-----

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
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.

제16조(정책협의회) ① 정책협의

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촉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위원의 해촉(解囑) 등으로
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
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
간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협의
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
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
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
<u>제16조</u> · <u>제17조</u> (생략)	<u>밝히는 경우</u> ④ <u>정책협회의 위원장은 정책협회를 대표하고 정책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 ⑤ <u>정책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⑥ <u>정책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협회를 둘 수 있다.</u> ⑦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회 및 전문가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u> <u>제17조</u> · <u>제18조</u> (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987